

신규 이전가격 규정 공포



At a glance...

2020년 11월 9일

11월 5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이전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은 시행령 132/2020/ND-CP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 132는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세연도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132는 2017년에 공포된 기존 이전가격 관련 시행령 20을 대체하며,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비교가능 대상에 대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 상용 데이터베이스가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가 사용 가능한 비교가능대상의 검증된 출처로서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시행령 132에 따라,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독립성을 평가할 때, 벤치마킹 스터디 수행을 위해 상용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허용되며 또한 (세무당국의) 내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즉,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들의 요구사항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s)을 산정하고 부과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한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 인상

- 이자비용의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가 EBITDA (이자 법인세 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동 한도는 순이자비용 (즉, 한도 비교 전, 이자수익과 상계된 이자비용)에 적용됩니다.
-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차년도들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들의 순이자비용/EBITDA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손금산입의 기한은 5년입니다.
-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우대 대출, 국가 프로그램 및 국가 사회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대출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자금 조달의 경우는 이제 동 한도 적용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손금인정에 관련한 동 조항들은 올해 초에 발행된 시행령 68 하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범위 축소

- 정상가격 범위가 (이전 시행령 20에 따른 25번째 백분위수부터 75번째 백분위수까지에서 축소되어) 35번째 백분위수부터 75번째 백분위수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한이 10% 상승되었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전가격 이익률이 새로운 범위 내에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과세연도 2020년부터 이전가격 포지션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조항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익률이 이미 35번째 백분위수 이하를 기록한 기업들에게 유의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CbCR) 관련 신규 지침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전 세계 연결기준 매출액이 VND 18조 동을 초과하는 “최상위 베트남 모회사”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 “해외에 최상위 모회사가 있는 베트남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절차를 통해 베트남 세무 당국이 그러한 국가별보고서에 접근 가능할 경우, 국가별보고서는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제출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 경우의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상위 모회사가 위치하는 조세관할지역(국가)이 베트남과 국제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조세정보자동교환(AEOI)에 대한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최상위 모회사가 위치하는 조세관할지역(국가)이 베트남과 동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으나, 조세정보자동교환 방식을 유보하거나 국가별보고서가 자동적으로 베트남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베트남 내에 동일 그룹의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 경우, 최상위 모회사는 해당 모회사를 대신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된 자회사 (즉, 베트남 납세자)를 베트남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해외 최상위 모회사가 각 조세관할지역에서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 시행령 132는 국제조세조약이 적용됨을 규정합니다. 동 규정의 의도는 불명확하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단계 (Three-tiered)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의무의 추가적 면제 조건

면제대상이 확대되어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세자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국내거래만 존재하고,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동일하고,
- 어떠한 당사자도 세제 혜택을 누리지 않는 경우.

이를 통해 다수의 기업들에 있어 이전가격 규정 준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전가격 시행령 시행일

시행령 132는 2020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2020년 전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기업들의 경우, 동 시행령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0년 연말 이전에 과세연도가 종료된 기업들에 대한 적용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시행령 132는 시행령 68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이자비용 공제 증가분 신청을 위해) 수정된 2017년 및 2018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2021년 1월 1일까지 제출이 허용됨을 재확인합니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guyen Thanh Trung
Deputy General Director
+84 28 3823 0796 - Ext: 1503
nguyen.thanh.trung@pwc.com



Shim Jin Bo (심진보) – 하노이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shim.jinbo@pwc.com



Nguyen Huong Giang
Partner
+84 24 3946 2246 Ext. 1502
n.huong.giang@pwc.com



Son Han Hee (손한희) – 호치민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son.hanhee@pwc.com



Judith Henry
Director
+84 (28) 3823 0796, Ext: 1525
judith.henry@pwc.com



Jo Su Jin (조수진) – 호치민 사무실
Associate - Transfer Pricing & KBN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



Monika Mindszenti
Director
+84 (24) 3946 2246, Ext: 1506
monika.mindszenti@pwc.com

www.pwc.com/vn



facebook.com/pwcvietnam



youtube.com/pwcvietnam



linked.com/company/pwc-vietnam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5 countries** with over **284,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

©2020 PwC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